

영국판례 1

투고란에 게재된 내용이 공정한 비판에 해당하여 면책된다고 판시한 사례

Slim and Others v. Daily Telegraph Ltd. and Others [1968] 2Q.B.157

사실개요

원고 슬림(Slim)씨 (P1)는 약 30년 동안 햄머스미스(Hammersmith)시의 서기로 일하다가 퇴직한 후, 1959. 1. 1.부터는 원고 Vitamins Ltd. (P2)의 법률고문으로 취임하였고, P2 회사는 1929년 이래 햄머스미스의 어퍼몰(Upper Mall)에 식품제조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원고 그레이브(Grave)씨 (P3)는 오랫동안 P2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데일리 텔레그래프회사(The Daily Telegraph Ltd). (D1)는 영국 전역에 대단한 부수가 나가고 있는 신문의 소유주 겸 발행인이었고, 피고 허버트(Herbert)씨 (D2)는 P2 공장의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이었다. 어퍼몰은 햄머스미스시에 있는 테임즈(Thames) 강변의 넓이가 10 피트에 불과한 좁은 길로서, 그 노변에 개인주택이 여러 채 들어서있고, P2의 공장도 그 가운데에 있다. 일반 사람들은 이 길을 보행할 권리는 있으나, 차량을 타고 통행할 수는 없다. 수년 전 햄머스미스시 당국은 그 길에서 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문을 게시하였다. 거기에는 시청 직원인 P1의 서명이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자전거 타기 금지」라는 단순한 경고판으로 대체되었다. P2는 위 도로를 그의 공장에 이르는 회사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한다. P1은 법률고문으로서 P2의 그 도로에 대한 적법한 차량통행권을 확립시키려고 오랫동안 노력해왔다. 많은 그 지역 주민들은 회사가 그런 권리를 갖는데 반대해왔다. 어느 지방신문이 P2의 대변인을 만나 본 다음, 「그는 회사가 그 도로를 공장으로 드나드는 무거운 차량의 통로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자 D2가 D1신문사에 『이중사고』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편지를 보냈고, 그것이 1964. 3. 30.자 D1신문사의 독자투고란에 게재되었는데, P1은 이것이 그에 대한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퍼몰의 평화는 인근 P2공장의 차량통행권 주장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 진다면 강변의 이 좁은 길은 무거운 화물자동차의 통행으로 보행에 위험한 곳으로 될 것이다. 1953년의 London County 법 제 30조에 의하면 어퍼 몰에서의 차량운행이나 주차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로써 충분한 보호가 될 것 같지 않다. 관계당국은 아직도 그 회사의 주장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특기할만한 일은 어퍼 몰의 서쪽 끝에 있던 자전거 타기조차 금지하던 당국의 경고판이 이미 철거되었다는 것이다. 만약이 일로 주민들이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하여도 용서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해 동안이 경고문에는 현직

시청 서기인 슬림이라는 사람의 서명이 들어 있었다. 이제 바로 그 슬림씨가 Vitamins Ltd.의 법률고문으로서, 위 도로에다 화물자동차를 운행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장본인이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P3가 D1 신문사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1964. 4. 14.자 신문에 게재되었다. 즉, 「우리 회사는 결코 어퍼 몰에 있는 Linden House 남쪽 통로에 대한 화물자동차의 통행권을 행사할 의도를 가진 바 없고, 그렇게 하여온 바도 없다. 우리들은 따라서 최근의 투고란에 나타난 일반적인 생각에 찬동한다. 그러나 우리는 신문에다 서둘러 투고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의도를 확인하여 보는 예의를 차리지 아니한 이웃들에 의하여 부당하고 무모하게 비난 당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30여년 동안 우리회사는 한번도 문제의 지점에 대한 통행권을 어떤 식으로든 남용해 본 일이 없다. 반대로 우리는 소유지에 대한 건물 개축의 허가를 얻으려고 거듭 노력하면서, 강변도로의 편의와 경관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고, 그 확장을 위한 모든 설비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왔다.」라고 하였다. 이 편지에서 P3는 화물자동차의 사용의도가 없음은 명백히 하였으나, 다른 상용 차량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편지는 D2의 답장을 유발하였고, 그것이 1964 4 23.자 신문에 게재되었는데, P2, P3는 그것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Vitamins Ltd.가 그 도로에 대한 화물자동차의 통행권을 행사할 의도가 없다는 소식은 다행한 일이다. 무고하게 비난을 받았다는 그의 항변은, 그렇지만, 만약 그의 회사가 진정으로 그의 편지대로 행동하였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회사 직원들의 승용차가 이미 어퍼 몰의 서쪽 끝을 따라 다니고 있고, 특히 50년 동안 보행자만 다니던 바로 그 도로에는 사실 아직도 당국의 자전거 타기 금지라는 경고판이 그대로 있다. 주민들에게 그 운전자들은 그 땅이 Vitamins Ltd.의 소유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그 회사의 의도가, 시당국의 결정을 기다릴 것도 없이, 여하간에 Corintkian Sailing Club 앞 도로에 대한 차량통행권을 확립하는 데 있음이 너무나 명백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물어보지 아니한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그레이브씨가, 그런 조치를 은근히 추진하면서, 그 도로를 강변도로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것은 고사하고, 어퍼 몰의 특징을 보존하기 바라는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원고들은 1964. 3. 30.자 기사는 D2가 D1의 편집인에게 P1과 그의 자격 및 사업에 방해되도록 악의로 허위사실을 써보내어 D2로 하여금 이를 출판케 한 것이고, D2는 악의로 그 허위사실을 인쇄, 출판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위 기사는 통상의 뜻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적인 추론을 담고 있다고 한다. 즉 (1) P1은 변호사로서 직무상 떳떳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잘못이 있고, (2) P2에 대한 법률고문으로 있으면서, 과거 시청직원으로서 있었던 동안에 지켜온 변호사로서의 행위기준보다 바람직스럽지 못하거나 낮은 행위기준을 택하고 있고, (3) 퇴직한 시청직원으로서 그의 전 고용주인 햄머스미스시에 대해 불충한 잘못을 저질렀고, (4) 어퍼 몰에서 경고판을 철거하도록 시당국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전직 시청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1964. 4. 23.자 기사는, D2가 P2, P3에 관하여 그들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도록 악의로 허위의 편지를 써서 출판한 것이고, D1은 악의로 그 허위내용을 인쇄하여 출판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들에 의하면 그 내용은 통상의 뜻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은 명예훼손적인 결론을 낳게 된다는 것이다. 즉, (1)P2의 차량에 의한

어퍼 몰의 사용에 대하여 P2가 갖고 있는 의도에 관한, 그리고 강변로의 편의와 외관을 개선시키고 넓히려는 P2의 희망에 관한, P3의 주장은 모두 위선이고, (2)P2는 대표이사인 P3의 지시에 따라 어퍼 몰에 자동차를 통행 시킨 불법, 부당하고 뻔뻔한 행위를 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들은 기사내용이 모두 정실한 사실이라는 항변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 즉 어퍼 몰에서의 공공의 권리 및 그에 대한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악의적인 동기 없이 한 공정한 비판이었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제 1심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데닝(Denning) 판사 : D2가 쓴 투고는 모두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임에 틀림이 없으나, 어느것이나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만약 그것이 공정한 비판으로 되면 피고들은 보호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 P2회사는 어퍼 몰에 대한 차량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였다. 그에 관한 그 회사 간부들의 행위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그에 관하여 비판을 할 권리가 있다. 그 투고는 실제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었다. 원고들은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별로 다투지 아니하였고, 주로 그 투고에서 한 「이중사고」, 「냉소적인 태도」, 「무고하게 비난을 당하였다는 항변」, 「어떻게 그레이브씨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가」라는 등의 비판에 대해서만 불만을 품고 있다. 이러한 문구들은 독자들에게 따라 각기 달리 받아들여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제 1심 판사와 같이 불성실과 위선의 뜻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나의 견해와 같이 모순이나 솔직성의 결여로 이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한 비판을 하였다는 항변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독자들이 그 기사로 인하여 평가할 다양한 비난을 빠짐없이 탐색해내는 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작성자가 악의적인 동기를 가진 것인가 또는 아닌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일이다. 공익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자신의 순수한 견해를 발표하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그의 말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비방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의 의견이 잘못되었거나 과장되었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었다고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것이 잘못 표현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갖가지 비꼬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오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정한 비판을 하였다는 훌륭한 항변권을 갖게 된다. 그의 정직함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된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정직하게 발표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한, 비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 이상의 뜻으로 곡해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공정한 비판의 권리는 언론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나는 이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 권리는 법률적인 제약(refinements)에 의하여 축소되어서는 아니된다. 어느 시민이

잘못된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는 신문에다 자유로이 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신문은 그의 편지를 자유로이 게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종종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 유일한 길이다. 물론 그 소재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야 한다. 작성자는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진실한 견해를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와 신문은 면책되어야 한다 그들은 명예훼손의 소송을 당할 두려움 때문에 장애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 사건 투고 기사들을 살펴보면 모두 주창자에 의한 강력한 비판이었던 것 같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제소를 하지 못한다. 이들 투고는 일견하여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한 공정한 비판이었다 비록 그 기사가 불성실과 위선을 비방한 것이라고 하여도(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작성자는 그들의 정직한 의견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면책되기에 충분하다. 「여하간에」(Willy-nilly)에 관하여, 그것은 단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던 앓든 간에, 회사가 통행권을 확립하려고 하였다는 뜻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에 관한 진술이었다면 전적으로 진실한 내용이었고, 만약 그것이 비판이었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공정한 것이었다. 회사는 이것을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를 인용하여 피고들의 승소판결을 선고하고자 한다.

디플록(Diplock) 판사 :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의 소송은 단어의 뜻에 관한 것이다. 단어는 사람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부정확한 도구이다. 같은 단어라도 사람에 따라 달리 이해될 수도 있고 또 그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전달코자 한 것과는 다른 뜻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논의가 투고에 쓰여진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집중되었다. 원고들은 문제의 투고가 가지는 통상의 의미에 관한 이슈를 그들 기사에 소장 기재의 명예침해적인 뜻이 포함되느냐 아니냐 하는 단일한 문제에 한정시키고 있다. P1 에 관한 최초의 투고내용은, 그가 행머스미스시에 고용되어 있었을 때는 시를 위하여 차량은 물론 자전거조차도 어퍼 몰에서 다니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제 고객이 Vitamins Ltd.로 되자 그 회사를 위하여 회사차량이 어퍼 몰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는 그렇게 하였다. 올바른 생각을 하는 변호사들의 생각으로는, 그 행동에 그를 깎아내릴만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변호사의 직무는 고객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P1 은 자신의 전직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일로 만나 협조를 얻어야 할 시청 직원들은 잘 알고 있고, 아마도 결정권고권이 있는 시의원들의 종래 방침도 잘 알고 있다는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틀림없이 그는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도, 의뢰인을 위한 주장을, 그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가장 적절한 형식으로, 펼 수 있는 좋은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위에 관하여 변호사의 직무상 부당한 점은 없다. 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P1 의 의뢰인에 대한 의무였다. 위 편지내용에 P1 이 이 이상의 무엇을 하였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생각되지 아니한다. 그로 인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생각은, 변호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비록 그러한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변호사의 명예를 침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완벽하고 공정한 비판에 해당한다. 두 번째 편지에 관하여, 「여하간에」라는 부사와

「가장한다」라는 동사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여기서 「여하간에」라는 말은, 그 투고의 문맥으로 보아, P2 회사가 시당국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방침을 밀고 나가고 있었다는 것 이상의 뜻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회사는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가장한다」는 동사에 관하여, 그 말은, P3가 그의 투고에서 그의 회사는 어퍼 몰을 보행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길로 남겨놓자는 주민들의 견해에 일반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한 데 대응하여 사용된 것이었다. D2가 답장에서 한 말은, P3의 그와 같은 주장은 그 회사 직원들의 승용차에 의하여 어퍼 몰의 통행권을 확보 및 증대시키려고 시도한 것과의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강력히 지적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다. 이것 역시 공정한 비판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항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건을 상식과 첫인상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샬먼(Salmon) 판사 : 이 사건에 있어서 주된 문제는 투고기사에 원고들 주장의 뜻이 담겨 있느냐 또는 아니냐 하는 것이다. 나는 그 기사에 원고들 주장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한다. 데일리 텔리그래프(Daily Telegraph)지의 보통 독자는, 1964. 3. 30.자 투고 기사를 보고, P1은 시청 직원이었을 적에 어퍼 몰에 관한 어느 견해를 옹호한 바 있는데, P2의 법률고문으로서의 반대견해의 옹호자로 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P1이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위배하였거나 정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가 한 행위는, 비록 문외한들은 다소 냉소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통상적 의무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그 기사를 읽은 보통의 사람들은, P1이 시청에 여러 해 동안 봉직하였음으로 인하여, 시청에 제기할 주장의 종류와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쌓았고, 시청 직원들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들과 협상을 함에 있어 다소 생소한 사람보다는 대체로 유리한 지위에 처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어떤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청렴성을 조금이라도 의심케 할만한 문제는 없지만, 그는 그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시의회를 설득할 가장 훌륭한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 점은 P2에게도 명백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다. 아마도 P2는 그 때문에 P1을 고용했을 것이다. 보통의 독자들은 P2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이해 상반되는 다른 납세자들에 대하여 부당하게 유리한 지위를 획득하려 하였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정말 P2가 전직 시청 직원을 고용하여 시 당국과의 접촉에 있어서 그를 앞장세운 사실은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하고, 다소 입맛이 쓰게 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이나 변호사 업무의 적정이라는 문제는 제기하지 아니한다. D2의 두 번째 편지는 P3의 투고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다 거기에 있는 「여하간에」라는 문구는, P2의 의도가 주민이나 시당국이 좋아하든 싫든 간에 어퍼 몰에 대한 차량통행권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는 이상의 뜻은 아닌 것 같다. 주민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였다. 시에서도 P1에게 보낸 1964.3.18.자 공문에서, 「귀하의 의뢰인의 주장은 아직 검토 중에 있지만, 그가 Linden House 앞길에 대한 차량통행권을 갖는다는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그 뜻을 명백히 하였다. 또 P2 회사의 내부서류도, 그 회사가 반대에 무릅쓰고 그 길을 최소한 하루에 한번씩 차량통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고, 회사의 이른바 현존하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 왕복사실을 기입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생각컨대 P2 회사의 의도가 여하튼 간에 차량통행권을 확보한다는 데에 있음을 말한 위 투고의 문구는 전적으로 진실한 내용이었고, 여하튼 공정한 비판이었다.

D2는 위 투고에서 화물자동차용으로는 어퍼 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P3의 의견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른 차량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한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P2의 의도는 만약 건축허가를 얻게 되면 그 소유의 땅에 건물을 개축하며, 이로써 강변로의 효용과 외관을 개선하면서 노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있다는 P3의 진술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한 바도 없다. 결국 D2의 두 번째 투고에는, P2, P3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P3가 차량에 의하여 어퍼 몰을 사용하는데 대한 P2의 의도와, 강변로의 효용과 외관을 개선시키며, 노폭을 확장시키려는 P2의 희망에 관하여 한 진술을 통하여 위선을 하였다는 추론이 담겨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인용되어야 한다.